

글로벌 해양강국!



2018년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.

2018. 1.



해양수산부



목 차



I. 해양 분야

1. 국내 최초의 무인선 개발이 완료됩니다. 1
2. 해양수산 창업기업의 사업화 R&D를 지원합니다. 2
3. 마리나 창업 부담을 완화합니다. 3
4. 생존수영 교육과 해양안전체험교육이 확대됩니다. 4
5. 해양오염사고 비상매뉴얼 관리가 강화됩니다. 5
6.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형평성이 제고됩니다. 6
7. 해양예보 서비스를 확대합니다. 7

II. 수산 분야

1. 수산직불금을 어가당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합니다. 9
2. 어업인 대상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. 10
3. 어업도우미 지원단가를 높이고 가사도우미를 지원합니다. 11
4.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한도를 상향합니다. 12
5. 수산물 유통단계를 효율화합니다. 13
6.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이 확대됩니다. 14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7. 수산생물 수입 시 검역증명서 첨부대상이 확대됩니다. | 15 |
| 8.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금을 매월 1백만원 지급합니다. | 16 |
| 9. 원양어선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을 중고선 대체까지 확대합니다. | 17 |
| 10. 냉동공치에 부과되는 조정관세가 인하됩니다. | 18 |

Ⅲ. 해운해사항만 분야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.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산업을 종합 지원합니다. | 20 |
| 2. 노후 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. | 21 |
| 3. 한-대만 크루즈 항로 운항이 본격화됩니다. | 22 |
| 4. 국민안전점검관과 합동으로 여객선 안전을 점검합니다. | 23 |
| 5. 도서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항로지원을 확대합니다. | 24 |
| 6. 예선업 서비스 평가를 통해 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합니다. | 25 |
| 7. 선박 출입 등 항만민원신고 업무가 간소화 됩니다. | 26 |
| 8. 신항만건설사업에 민간 참여가 확대됩니다. | 27 |
| 9. 해외항만시장 진출 정보에 대한 메일링 서비스를 개시합니다. | 28 |
| 10.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신기술 사용을 확대합니다. | 29 |

I

해양 분야

1. 국내 최초의 무인선 개발이 완료됩니다.

해양개발과(☎ 044-200-5244~5)

원격제어로 해양조사 및 감시가 가능하고 자율운항 시스템이 접목된 첨단 소형 무인선의 국산화 개발이 완료됩니다.

- 장애물을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으며, 자동으로 운항경로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**해양감시 및 조사용 무인선 최종 시제선*** 제작이 '18년 상반기 완료됩니다.

* 전장 8m, 폭 2.4m, 총 톤수 3톤, 최대속도 47노트

- 제작 완료된 무인선*은 **실해역 시험과 성능 개선**을 통해 핵심기능을 고도화하고, **시연회**를 통해 무인선의 우수한 성능을 확인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

*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(2011~2018, 사업비 270억)

- '19년부터는 공공분야에서 **기존 유인 조사선과 감시선**이 수행하던 해양조사 및 감시임무에 **무인선을 투입하는 시범사업**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

<무인선 주요 활용분야>

활용 분야	주요내용
해양조사	해양환경 조사, 수산자원 모니터링, 적조 예찰 등
해양감시	불법조업 세력 감시, 경비정과의 협력 단속 등

2. 해양수산 창업기업의 사업화 R&D를 지원합니다.

해양정책과(☎ 044-200-5235)

해양수산 창업·투자 전담기관을 통해 창업기업을 원스톱 지원하고, 사업화 R&D 지원의 일정비율(18년 40%) 이상을 창업기업에게 할당합니다.

- 해양수산 창업·투자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창업기업의 초기 기반구축과 사업 아이템 제품화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.
- 또한, 성장잠재력이 있으나 기술개발 자금이 부족한 해양수산 창업기업의 사업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(사업화 R&D)의 신규과제를 선정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창업기업에게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.
- 지금까지는 창업기업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R&D 신규 과제가 선정되어왔으나, 2018년부터는 40%를 창업기업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2020년까지 50%, 2022년까지는 55%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

3. 마리나 창업 부담을 완화합니다.

항만지역발전과(☎ 044-200-5981), 해양레저과(☎ 044-200-5255)

마리나항만시설 범위 확대 및 마리나 정비업 신설, 보험제도 개편 등 마리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합니다.

- **마리나 창업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리나 정비업을 신설하고, 해양레저 특화 대학 내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과정 도입 및 창업 설명회 개최 등 청년의 고소득 마리나 창업 여건을 조성합니다.**

- 아울러, 현재 마리나선박 승선 정원 1인당 20만원 대인 **보험료를 10만원대로 인하**하고, 인명손실에 한정된 보험 보장범위를 선체 등 대물손실에 대한 보장으로 확대하는 등 **보험제도를 개편**합니다.

- 또한, 마리나항만시설 범위에 선박성형틀 등 **선박제조용시설을 추가**하여 **마리나제조업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마리나 창업이 가능**하게 되었으며, **선수금 제도 활성화**를 위해 실시계획 승인 후에만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**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**하였습니다.

* **선수금 제도**는 사업자의 초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향후 조성될 토지 등을 이용하려는 자들로부터 **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**로 2016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2017년 6월말부터 시행됨

-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**실시계획 승인 후에만** 선수금을 받을 수 있고,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**선수금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**해야 합니다. 이 때 조성 토지 등의 **가격·면적·위치·상태·이용방법** 등에 대하여 **선수금 지급자와 미리 협의**해야 합니다. 만약 이를 어기고 **선수금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(경고)**을 받게 됩니다.

- ☀ **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의 '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'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4. 생존수영 교육과 해양안전체험교육이 확대됩니다.

해양레저과(☎ 044-200-5251), 해사안전정책과(☎ 044-200-5846)

생존수영 교육(34→50개소)을 강화하고, 워터파크 시설내에 해양 안전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국민 해양안전교육을 확대합니다.

● 체험교실과 지역관광, 생존수영을 하나로 묶은 '복합형 체험교실'을 '17년 상주보, 낙단보에서 '18년 울주 진하 해수욕장까지 확대합니다.

● 또한, 생존수영 교육 운영개소를 확대('17년 34개소 → '18년 50개소)하고,

* (프로그램) △물과 친해지기(공포심 없애기), △물에 뜨기(배면뜨기), △호흡하기 (음파호흡), △체온유지(웅크리기) 등 자기구조법 및 심폐소생술 등 타인구조법

- '생존수영 배워보기' 책자를 발간하여 지자체, 교육기관에 배부함으로써 생존수영 교육을 체계화하고 해양레저스포츠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

* 생존수영교육은 초등학생 이상부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, 전화(1661-2280, 1577-2281) 또는 해양레저포털 누리집(www.oleports.or.kr)을 통해 신청

● '18년 1월부터 천안상록리조트 워터파크(아쿠아피아) 시설내에 해상생존 체험장을 운영*하여 해양활동 시 알고 있어야 하는 구명조끼 착용방법, 구명뗏목 작동법 및 운용법, 생존수영 등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.

* 시범운영('18.1월~2월)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워터파크로 운영 확대 추진 예정('19년~)

- 또한, 해양안전전시장을 운영하여 해양레저 등 해양활동 시 접하게 되는 다양한 구명장비 등을 보기 쉽게 전시하고, 구명장비 사용법에 대해 동영상을 통해 자세히 설명합니다.

* 구명용품(구명조끼, 구명뗏목, 구명부환 등), 구명신호기(자기발연부신호, 신호홍염, SART, EPIRB, 자기전화등 등) 등 20여종 및 사용법(영상) 소개

5. 해양오염사고 비상매뉴얼 관리가 강화됩니다.

해양환경정책과(☎ 044-200-5289)

선박과 해양시설의 해양오염사고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매뉴얼을 현행화하고 관리를 강화합니다.

- **선박 및 해양시설의 해양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개정된 「해양환경관리법」이 '18년 5월 1일 전면 시행됩니다.**
- **선박 및 해양시설의 해양오염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매뉴얼(오염비상 계획서)의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신고할 의무가 없어 선박·해양시설의 구조도면 등 정보가 현행화되지 않아 신속한 현장대응이 곤란하였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, 오염비상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검인을 받도록 의무화합니다.**
- 또한, 선박 및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이송·배출 작업을 지휘·감독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휴가 등의 사유로 부재하는 경우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대리자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.

☀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의 '해양환경관리법'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형평성이 제고됩니다.

해양생태과(☎ 044-200-5315~7)

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이 확대(대규모→중규모 이상)되고, 지역계수가 세분화(2→4단계)됩니다.

-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된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2018년 3월 전면 시행됩니다.

- 지금까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대규모 개발사업 위주로 부과되어 해양 개발사업의 약 90%가 면제되고 있으며, 지역계수도 단순하여 합리적인 해역 이용을 유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.

* 공유수면 내 개발·탐사·채굴사업, 바다골재채취 등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협력금 부과

- 이에 따라, 2018년 3월부터 협력금을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중규모 이상의 사업*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대상을 확대하고, 협력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**제곱미터당 부과금액도 종전의 25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**하였습니다.

* 길이 150m 또는 면적 3천㎡ 이상의 시설물·공작물 설치, 면적 1천㎡ 이상 매립, 면적 5만㎡ 이상 식물 재배·제거 등

- 또한, 개발해역별 생태환경의 차이에 따라 협력금이 차등 부과될 수 있도록 **지역별·개발행위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계수를 세분화***(2→4단계) 하였습니다.

* (現) 항만구역(2), 항만구역 외(4) → (改) 항만·어항(2), EEZ(3), 법정 보호구역(20), 기타(6)로 구분, 매립행위에 대한 가중치(×2) 부여(항만·어항 제외)

- ☀ **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의 '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'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7. 해양 예보 서비스를 확대합니다.

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(☎ 051-400-4387)

해양정보를 상시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예보방송 「On바다」 서비스를 확대하고 선박운항정보를 항로별로 세분화합니다.

- 안전한 해양 활동을 위하여 내일의 바다정보, 해수욕·바다낚시 걱정 여부 등 해양 정보를 제공하는 해양예보방송 「On바다」의 정보 전달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'18년부터는 전문 해양캐스터가 직접 알기 쉽게 해양정보를 전달합니다.
- 또한, 안전한 선박 운항을 위하여 7개 권역별로 제공하던 선박운항지수(바닷물의 흐름, 파랑, 바람 예측 자료*)를 2018년 1월부터는 12개 항로별로 세분화하여 시간대별**로 제공합니다.
 - * 물결과 바람이 잔잔한 1단계부터 파도·바람이 강해 선박 운항이 어려운 4단계까지 구분
 - ** 새벽(0시~6시), 오전(6시~12시), 오후(12시~18시), 밤(18시~24시)
- 아울러, 현재 3개(수영, 전곡, 왕산) 마리나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해양정보를 목포, 통영, 여수(소호) 마리나를 포함하는 6개 마리나로 확대하여 해양 레저 활동의 안전성을 제고하고,
 - '18년 6월부터는 여객수요를 고려하여 국외로 연결되는 부산~대마도, 부산~후쿠오카 항로에 대한 해양정보도 추가 제공할 계획입니다.

☀ 더 자세한 내용은 '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>해양예보방송>해양방송>항행통보>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>해양정보포털>해양생활>선박운항지수'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Ⅱ

수산 분야

1. 수산직불금을 어가당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합니다.

소득복지과(☎ 044-200-5466)

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수산직불금을 어가당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합니다.

- **한·미 FTA(자유무역협정) 여·야정 합의사항('11.10)에 따른 어촌의 피해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* 수산직불금**이 인상됩니다.**

- '18년에는 5만원이 인상되어 어가 당 60만원이 지원되고, '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인상되어 '20년에는 70만원이 지원됩니다.

* 육지로부터 8km이상 떨어진 도서(섬) 또는 8km미만 떨어진 도서 중 정기여객선이 1일 3회까지 운항하는 연륙되지 않은 도서(섬)

** 한·미 자유무역협정 농어촌분야 피해보전 대책으로 도입('12년)되어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(섬)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

- 참고로 조건불리 수산직불제는 시범사업('12~'13년)을 거쳐 '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, 한·중 FTA 여·야정 합의('15.11)로 '17년부터 '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인상*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.

* ('12~'16년) 어가당 50만원/년 → ('17) 55 → ('18) 60 → ('19) 65 → ('20) 70

☀ 더 자세한 내용은 '해양수산부 홈페이지> 소식바다> 보도자료> 수산직불금 지급단가 60만원으로 전년보다 5만원 인상'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. 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.

수산정책과(☎ 044-200-5432)

어업인에 대한 양도소득세, 증여세, 취득세 감면에 따라 어업 경영 여건이 개선됩니다.

● '18년 1월 1일부터 「조세특례제한법」과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·시행됨에 따라 **어업인의 세제 부담이 완화됩니다.**

● 어업인들이 **8년 이상 자영한 어업용 토지***를 양도하는 경우 연간 1억원, 5년간 2억원 한도에서 **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** 되며(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69조의3),

* 「수산업법」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, 「내수면어업법」제11조제2항에 따른 육상양식어업, 「수산종자산업육성법」에 따른 육상 수조식(水槽式) 수산종자생산업 및 육상 축제식(築堤式)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

- 20톤 미만 어선과 10만 m^2 이내의 어업권, 4만 m^2 이내의 어업용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**5년 간 1억원 한도에서 증여세를 감면받게** 됩니다. (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71조제1항)

● 또한, 1만 m^2 이내의 어업용 토지에 대하여 **취득세를 50% 감면받게** 됩니다 (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9조제1항).

☀ **더 자세한 내용은 '해양수산부 홈페이지> 소식바다> 보도자료> 2018년부터 어업인 대상 세제지원 대폭 확대된다'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3. 어업도우미 지원단가를 높이고 가사도우미를 지원합니다.

소득복지과(☎ 044-200-5463)

어업도우미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어업인 및 어촌지역의 고령·취약가구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합니다.

- 사고·질병 또는 임신·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업일을 해주는 **어업도우미**를 지원중이나, 낮은 지원 단가에 따른 어업인들의 자부담 과다로 **활용 실적이 저조한** 문제가 있었습니다.

-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어업도우미 **지원 단가를 인상(7→10만원/일)** 하고, **자부담비율을 인하(30→20%)**합니다.

* 정부부담률 상향 : 정부 70%(국비) → 정부 80%(국비50, 지방비30)

- 또한, 어촌거주 65세 이상 가구, 수급자(중위 소득 50%이하), 다문화 가정, 조손가구, 장애인 가구 및 경로당에 **가사도우미를 신규로** 지원합니다.

- 취약가구는 **연간 최대 12일(경로당은 24일)** 지원받을 수 있으며, 가사도우미는 취약가구(시설)를 방문하여 **취사(반찬조리), 세탁, 청소, 목욕보조 등 가사서비스를** 제공합니다.

* 지원대상 : ① 중위소득 50%이하 가구와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, ② 어촌 거주자 및 사회시설의 경우, 만 65세 이상가구와 중위소득 50%이하 가구, 다문화 가정, 조손 가구, 장애인 가구, 읍·면지역 경로당

4.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(융자) 지원한도를 상향합니다.

소득복지과 ☎ 044-200-5463

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(융자) 지원한도를 상향하여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.

-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어업기반 조성 및 경영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(2%)로 융자해 주는 수산업경영인* 육성사업의 지원 한도를 상향하여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.

* 수산업경영인 : 어업인후계자(후계어업경영인), 전업경영인, 선도우수경영인

- '17년까지 단계별 지원한도는 어업인후계자 1억원, 전업경영인 2억원,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 이었으나,
 - '18년부터 어업인후계자 2억원, 전업경영인 2.5억원,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 까지 지원 가능하게 됩니다.

☀ 더 자세한 내용은 '해양수산부 홈페이지> 정책바다> 수산정책>2018년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지침'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 수산물 유통체계를 효율화 합니다.

유통정책과 ☎ 044-200-5443~4

수산물을 산지에서 집적하여 전처리 가공을 통해 상품화하는 산지거점유통센터를 확충하고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.

- 수산물을 산지에서 집적하여 전처리 가공을 통해 상품화하는 생산자단체 중심의 산지거점유통센터는 '17년까지 전국에 5개소가 건립되어 운영 중입니다.

- '18년에는 60억 규모 3개소를 설립하기 위해 국비 36억원을 확보하였고, 3개 산지거점유통센터 사업 부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.

* 운영중인 산지거점유통센터 : 속초·제주('13~'15년), 완도·고성·경주('15~'17년)

- 또한, '18년부터 소비지분산물류센터*를 본격 착공(1개소, 인천)함에 따라 생산자단체 중심의 新유통경로**를 구축하여 기존 유통경로와의 경쟁을 통해 수산물 유통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* 인천권('16~'19), 호남권('18~'20)

**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경로로 산지거점유통센터와 소비지거점분산물류센터를 직접 연계하여 수산물을 집적·상품화 후 소비지로 판매하는 유통시스템

6.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이 확대(교육의무화)됩니다.

어업정책과(☎ 044-200-5516)

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이 2배로 확대(최대 2년)되고, 재허가 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.

-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이 최대 2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어업허가의 취소 사유별 제한기간도 2배로 확대됩니다.

<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별표7 >

허가취소의 사유	허가제한기간 (총전 → 확대)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	1년 → 2년
2. 허가받은 어업 외의 어업을 한 경우	1년 → 2년
3.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해당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경우	1년 → 2년
4. 북한에 나포 또는 억류되거나 어로한계선을 넘은 경우	1년 → 2년
5. 조업자제선을 넘은 경우	6개월 → 1년
6. 사전신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	6개월 → 1년
7. 국제기구 또는 연안국의 관할 수역을 침범하거나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정부 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	5개월 → 10개월
8. 그 밖에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·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	5개월 → 10개월

- 또한, 어업허가 취소를 받은 자는 재허가 신청 전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
- 어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어업허가 취소사유에 따라 4시간(제5호~제8호) 또는 8시간(제1호~제4호)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
* 세부적인 교육과목·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 정함

- ☀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의 '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'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7. 수산생물 수입 시 검역증명서 첨부대상이 확대됩니다.

어촌양식정책과(☎ 044-200-5622)

냉동·냉장 새우가 지정검역물에 추가되고, 자연산 수산생물 및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서도 검역증명서 첨부이 의무화됩니다.

- 2018년 4월 1일부터 지정 검역물*에 냉동·냉장 새우가 새롭게 추가(기존 : 수산생물제품 중 가공하지 아니한 냉동·냉장한 전복류 및 굴)되어 수입 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,

- 자연산 수산 생물을 수입하거나 여행자가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검역증명서 첨부이 의무화됩니다.

* 수출입 검역대상이 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으로 이식용 수산생물, 식용·관상용·시험·연구조사용 어류·패류·갑각류, 수산생물제품 중 가공하지 아니한 냉동·냉장한 전복류 및 굴

- 이에 따라, 질병 유입 가능성이 높은 냉동·냉장 새우 및 자연산 수산생물의 무분별한 반입을 막을 수 있게 되어 국내 수생태계를 보호하고,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- ☀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의 '수산생물 질병 관리법 시행규칙'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8.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금을 매월 1백만원 지급합니다.

어촌어항과 ☎ 044-200-5662~4)

영어(營漁)경력 3년 이내의 40세 미만 청년어업인에게 안정적인 초기 어촌정착을 위한 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급합니다.

- 65세 이상 어업경영주는 14.2%에 달하는 반면, 40세 미만은 2.4%(1,303명)에 불과하여 어촌 고령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청년 귀어인의 어업 진입을 독려하기 위해 영어정착 지원을 실시합니다.

- 귀어자 추이 : ('14) 978 → ('15) 1,073 → ('16) 1,005

- 40대 이하 귀어자(비중) : ('14) 186명(19.0%)→ ('15) 207(19.3)→ ('16) 188(18.7)

- **40세 미만의 면허·허가 어업 경영 3년 이하 청년 어업창업자 중 어업의지가 높은 어업인**을 대상으로 **영어정착 지원금을 매월 1백만원, 최장 3년까지** 지원합니다.

- 지원 받은 **영어정착 지원금**은 소모성 영어 기자재 구입, 상품 개발비, 마케팅 비용 등 어촌에 정착하여 어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*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신청 대상은 어촌이외 지역에서 이주한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신규 어업창업자 또는 예정자이며, 맨손어업 창업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9. 원양어선 현대화사업, 중고선 대체까지 확대합니다.

원양산업과(☎ 044-200-5366~7)

원양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원양어선 현대화사업 용자 지원을 중고선 대체까지 확대하였습니다.

- 원양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, 어선원 복지를 증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'원양어선 현대화사업(용자사업)'의 지원대상이 **중고선으로 대체**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**확대 적용**됩니다.

- 2017년에는 어선 신조(新造), 설비 현대화에 대해서만 용자지원을 하였으나, 사업지침 개정으로 2018년에 중고선 대체까지 확대하였습니다.

* 신조대체(용자 70%, 자담 30%), 중고선 대체(용자 80%, 자담 20%), 설비현대화 (용자 100%)

- 상대적으로 큰 비용이 소요되는 원양어선의 **신조**는 경영 여건이 열악한 중소 원양선사의 경우 담보 및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참여와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.

- **중고선 대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추진이 가능하여 중소 원양선사의 참여 증가가 예상**되어 노후 어선의 비율도 감소하고,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* '16년말 기준 21년 이상 노후 원양어선은 전체 원양어선(255척)의 87.5%(223척)

- ☀ 더 자세한 내용은 '해양수산부 홈페이지 > 소식바다 > 새소식 > 공지사항 > 2018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(원양어선 현대화사업)'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0. 냉동공치에 부과되는 조정관세가 인하됩니다.

통상무역협력과 ☎ 044-200-5387)

냉동공치 조정관세가 소폭 인하(28→26%) 됩니다.

- '18년 1월 1일부터 냉동공치에 부과되는 조정관세가 기존 28%에서 26%로 2%p 인하됩니다.
- 조정관세는 수입 증가로 국내시장 교란 또는 생산기반 붕괴 등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수입품의 관세율을 상향 조정(관세법 제69조)하는 제도로서, 수산물은 냉동 명태, 냉동 공치, 냉동 오징어 등 7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습니다.
 - * ①냉동명태(기본관세 10% → 조정관세 22%), ②냉동공치(10→26), ③냉동오징어(10→22), ④활돔(10→28), ⑤활농어(10→28), ⑥활뱀장어(10→20), ⑦새우젓(20→32)
- 냉동 공치 조정관세 인하는 식탁 물가 안정은 물론, 냉동공치를 주요 미끼로 사용하는 갈치 생산 어업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☀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의 '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'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Ⅲ

해운·해사·항만
분야

1.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산업을 종합 지원합니다.

해운정책과(☎ 044-200-5722)

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금융을 포함한 해운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One-Stop으로 서비스합니다.

- 우리 해운산업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해운산업 재건의 토대를 마련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전담기관인 「한국해양진흥공사」가 '18년 7월 1일 출범합니다.

- 한국해양진흥공사는 **해운금융** 지원은 물론, 해운거래 및 선사 경영개선, 산업간 상생 지원 등을 **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를 높일** 것입니다.

* 법정 자본금 : 5조원, 소재지 : 부산광역시

- 또한,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자산투자, 투자보증 등 정책패키지를 상황에 맞게 구성함으로써 **자금운용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**, 여러 기관에 분산되었던 기능 및 다양한 지원방안을 연계하여 **One-Stop으로 서비스**하게 됩니다.

☀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의 '한국해양진흥공사법'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. 노후 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.

해운정책과(☎ 044-200-5715)

**선령 20년 이상 국적선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는 경우
신조 가격의 10%를 지원합니다.**

-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선령 20년 이상의 국적선(BBCHP 포함)을 해체 또는 매각하고,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는 경우 신조선가의 약 10%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.
- 지원 대상자는 노후선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하고자 하는 사업자 중에서 당해 연도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, 우선 3년간('18~'20년) 시행하되 사업효과 등을 평가하여 2년간('12~'22년) 연장할 수 있습니다.
- 지원액은 해체 또는 매각 대상 선박의 GT당 13만원을 곱하고, 여기에 선종별 계수*를 곱하여 산정합니다.

* LPG운반선(2.1), 견인용예선(2.9), 광석운반선(0.5), 냉동냉장선(1.5), 산물선(벌크선, 0.6), 석유제품/케미칼 겸용(3.4), 석유제품운반선(3.3), 석탄운반선(1.1), 세미(혼재) 컨테이너선(0.9), 원유운반선(0.6), 일반화물선(0.6), 자동차운반선(1.0), 철강재운반선(1.8), 케미칼운반선(5.0), 풀컨테이너선(1.1)

3. 한-대만 크루즈 항로 운항이 본격화됩니다.

해운정책과(☎ 044-200-5721)

'17년 시범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친 한-대만 크루즈의 입항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갑니다.

- 먼저, 최대 여행사인 라이언여행사 주관으로 프린세스 크루즈 선사의 **Majestic Princess호**(14만톤, 여객정원 3,560명)가 2018년 3월 26일 대만 기륭항을 출발해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**3월 30일 부산항에 입항**합니다.
 - 마제스틱 프린세스호를 타고 입항하는 3천 5백여 명은 부산 감천문화마을, 자갈치시장, 남천동 벚꽃길 등 부산지역의 주요 명소를 둘러볼 예정입니다.
- 다음으로 스타크루즈 선사의 **Aquarius호**(5만톤급, 여객정원 1,511명)가 **여수에 두 차례(4.22, 6.24) 입항**합니다. 이들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및 레일바이크 체험, 순천 낙안읍성과 순천만정원 등을 관광할 계획입니다.
 - 대만 관광객은 단체가 아닌 개별 관광객으로 지역 경제 소비 활성화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
- 2018년 하반기에는 모항과 기항지에서 관광객을 나누어 모객하고 각 기항지별로 관광객이 승하선하는 형태의 준모항 운항(3항차 이상)을 협의할 계획으로, 우리 국민들도 크루즈를 타고 대만과 일본을 갈 수 있는 한-대만 크루즈 항로 운항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.

4. 국민안전점검관과 합동으로 여객선 안전을 점검합니다.

연안해운과(☎ 044-200-5738)

국민과 함께 연안여객선 안전점검 현장을 공유하고,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점검관 제도를 도입합니다.

-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안전점검체계가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으나, 국민의 눈높이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여객선 안전에 대한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'18년부터 (가칭) '여객선 국민안전점검관' 제도를 도입합니다.
- 對국민 공모를 통해 여객선 국민안전점검관(15명)을 위촉하고, 위촉된 점검관은 서해권, 서남해권, 동남해권 3개의 권역*에서 활동하게 됩니다.

< 국민안전점검관 구성 >

구분	서해권	서남해권	동남해권
지역	인천.경기.충남	전북.전남	경남.부산.제주.경북.강원
인원	5명	5명	5명

* 선박 관련 관심.경력.자격자, 여객선 수시 이용자 우선 선정

- 국민안전점검관은 현장 모니터링 등 개별활동, 민관이 함께하는 여객선 합동점검, 공동 워크숍 참여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.
- 제시된 의견은 검토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등 안전관리 점검체계를 재정비 하는 계기로 활용될 예정입니다.

* 국민안전점검관 공모('18.2)→ 선정 및 위촉('18.3)→ 사전교육 실시('18.4)→ 국민 참여 합동점검('18.5, 11월)→ 공동 워크숍('18.12), 우수자 포상

5. 도시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항로지원을 확대합니다.

연안해운과(☎ 044-200-5731)

연속적인 적자(2년)를 기록하는 항로는 사업포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고, 육지와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한 국가지원도 추진됩니다.

- 도시민의 안정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**항로 단절이 우려되는 적자 항로와 운항 증편이 필요한 항로**에 대하여 **운영비를 지원**합니다.
- 종전에는 적자 누적에 따른 사업포기로 항로가 단절된 이후에야 해당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함에 따라 관련 절차 기간 동안 항로단절 상태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으나,
 - '18년 4월 1일부터는 **2년 연속 적자**를 기록하는 항로는 항로 단절 이전에 보조항로로 지정하여 **운항에 따른 결손액을 지원**합니다.
- 또한, 섬과 육지간 1일 생활권을 구축(1일 2회 왕복운항)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운항에 대해서도 국가가 일부 지원합니다.
 - 종전에는 지자체 예산으로 1일 생활권 구축 등을 지원하여 예산부족에 따른 지원 대상 축소가 불가피하였으나, **'18년부터는 국가에서 50%를 지원**하여 지자체와 함께 1일 생활권 구축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.

☀ 더 자세한 내용은 [법제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](#)> [법령바다](#)> [입법예고](#)> [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](#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예선업 서비스 평가를 통해 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합니다.

항만운영과 ☎ 044-200-5772

항만별 적정 예선 척수를 유지하고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서비스 질을 제고합니다.

- 예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선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예선의 운용 선령을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.
- 적정 예선척수 관리수단이 부재하여 예선 공급 과잉과 이에 따른 예선 서비스 질 저하가 문제됨에 따라,
 - 2018년 상반기부터는 항만별 적정예선 척수를 정하고, 그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는 예선 수급조절제도를 시행하여 예선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됩니다.
- 또한, 예선업체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우대조치나 증선에 있어 불이익 조치 등을 하여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서비스평가제 등이 도입됩니다.

☀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의 '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'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7. 선박 출입 등 항만민원신고 업무가 간소화됩니다.

항만운영과(☎ 044-200-6211)

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민원창구를 단일화하고 신고 업무를 간소화합니다.

- 지방해양수산청과 PA 등 7개 기관*으로 분산·운영 중인 **항만운영정보 시스템**(Port-MIS)이 '18년부터 **통합되어 운영**됩니다.

* 지방청(부산청, 인천청, 여수청), 항만공사(부산, 인천, 울산, 여수광양)

- **항만운영정보 시스템**(Port-MIS)이 지방청 및 항만공사에 분산·운영*됨에 따라 유사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등 민원 불편을 초래하였으나, '18년부터 단일센터로 통합되어 **민원창구가 단일화**되고 **신고 업무가 간소화**됩니다.

* 업무 관할에 따라 위험물 반입 신고 등은 지방청, 입출항 신고 등은 공사에 제출

- 또한, 무료대용량민원신고(ebXML*) 체계를 구축하여 EDI 이용료를 절감하는 등 민원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* 중계망(유료)을 활용한 방식이 아닌, 인터넷기반 무료대용량 신고지원 표준 전자문서

8. 신항만건설사업에 민간참여가 확대됩니다.

항만개발과 ☎ 044-200-5933~4

신항만사업시행자에게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투자를 촉진시켜 신항만 건설사업을 활성화합니다.

- 그 동안 신항만 투자비 규모가 크고,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민간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,
 - 「신항만건설 촉진법」 개정으로 '18년 5월 1일부터는 신항만건설 예정 지역에서 신항만건설사업과 연계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.
- 또한, 항만기능 다양화 요구에 대응하여, 신항만의 정의를 종전 수출입 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건설되는 항만에서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되는 항만으로까지 확대합니다.
- 아울러, 신항만건설 활성화 및 민자유치 확대를 위하여 신항만 기본계획을 보완하고, 사업시행자 범위, 실시계획에 따른 관계법률 인허가 의제 확대 등 신항만건설사업 절차도 정비합니다.

☀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의 '신항만건설 촉진법'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9. 해외항만개발사업 관련 메일링 서비스를 개시합니다.

항만투자협력과 ☎ 044-200-5962

주요국별 항만사업 발주정보, 시장동향, 투자환경 등 해외항만 시장 진출 시 필요한 정보에 대한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- '17년 도입되었던 해외항만개발사업 정보서비스 시스템(www.coscop.or.kr)의 기능을 **컨텐츠의 다양성, 신속성, 접근 편리성 등 3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강화**하였습니다.
 - 특히, '18년 1월부터는 국내외 항만·물류에 대한 새로운 소식 등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·단체 및 기존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회원을 대상으로 **'위클리 뉴스레터(Weekly Newsletter)' 메일링 서비스**를 제공합니다.
 - 기존에는 동향 정보, 항만 현황 등 단순 정보만을 제공했으나, '18년부터는 정보의 양적·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외 항만사업 발주 정보, 국가별 법·제도, 투자환경, 외국의 신뢰성있는 연구기관(BMI, CIC 등) 자료 등을 추가합니다.
- * BMI :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, CIC : Construction Intelligence Center
- 또한, 매월 1회 제공하던 정보를 '18년부터는 매주 1회 제공하고, 해양수산부 사이트, 검색엔진 등을 통해서도 쉽게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.

10.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신기술 사용을 확대합니다.

항만기술안전과(☎ 044-200-5958)

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신기술 적용을 확대하고, 매년 시험시공 지원기술을 선정하여 시험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- 해양수산 신기술의 현장 적용이 특정공법에 대한 발주청의 사용 부담 및 특혜 의혹 등의 이유로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,
 - '18년 1월부터는 해양수산 건설공사*에 사용되는 신기술 등**이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우선 적용하도록 합니다.
- * 항만시설(「항만법」), 어항시설(「어촌어항법」), 연안정비사업(「연안관리법」)
- ** 「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」, 「건설기술진흥법」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신기술, 신공법 및 특허 등
- 또한, 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신기술 등에 대해서도 공사 일부구간에 시험 시공할 수 있도록 '지원 대상 기술'을 선정하고 시험시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**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신기술 사용을 확대합니다.**